

관급자재제도 개선해야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건설관련 16개 단체는 지난달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정당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해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고사 위기로 내몰리는 건설업계의 처연한 몸부림이다.

이에 더해 설비건설업계는 보일러, 냉동기 등 주요 장비류부터 보온재, PVC관 등 일반자재까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물품, 조달우수제품의 관급자재로 지급받아 공사관리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매출액마저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122개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나, 중소제조업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제조사와 시공사 간 하자책임을 둘러싼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재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및 관리비용 증가, 공사품질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중소제조업체 간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 및 신기술 제품 등에 적용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수의계약 남용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제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예산 낭비와 지나친 경쟁 제한으로 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관급자재 제도는 자재발주뿐 아니라 현장설치까지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책임이 불분명해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

“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해서도 정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공사를 축소해야 한다. ”

다. 실제 보일러, 냉동기, 승강기 등 장비류 구매 시 현장설치를 포함한 물품발주 관행은 국민권의 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보온재, 밸브 등 규격이 다양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품목까지 직접구매 품목으로 지정되어, 설계변경 시 자재 물량 처리, 자재의 현장 내 보관 및 관리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체는 인건비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일부 발주기관과 연구원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늘어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의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재구매 비용이 20% 이상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총 사업예산도 3% 가까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해야 될 자재관련 설계도서 검토, 조달 요청 등 행정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넘기는 사례마저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으로는 일정 규모(종합건설공사 20억원,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데 있다. 이는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규제이다. 또한 직접구매 품목이 너무 많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의무화 품목이 많으면 공공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게 마련이고, 공사관리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관급자재 의무화가 중소기업체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한 고무발포보온재 업체

가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물품 직접생산 등록업체 중에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가 독점 수익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결국 발주자와 시공사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같은 제조업체에까지 피해를 주는 등 제도운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등 관급자재 제도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비롯, 조달청 등 관련부처가 심각성을 느끼고 이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의무화에 따른 ‘파이’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각 주체들의 입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서 공통의 문제의식 및 해결의지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우선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서도 정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대상공사를 축소해야 한다. 하자책임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발생 소지가 많은 자재와 제품 규격이 다양한 보편적인 자재 또한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시공사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접지원보다는 측면지원을,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접근에서 대외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중소기업체와 제조업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급자재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만 한다. 

[※ 이 칼럼은 지난 7월 14일 경설경제신문 <시론>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